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는 글로벌 명품 서울 구현이라는 시정철학에 발맞춰 인종차별 예방에 대해 비록 선언적이지만 선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서울시가 다민족에 대한 편견 없는 문화와 환경에서 재능있는 글로벌 인재 영입을 통해 다원화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 도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나아가 존중하는 것이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간다면 서울시는 더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이 높은 도시, 글로벌 명품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인종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